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13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이재관·장철민·허성무
허종식·안도걸·문진석
조계원·박지혜·권향엽
최혁진·소병훈·김태선
김 윤·장종태·서미화
정준호·오세희·정진욱
김정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의 확대를 위해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후단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대한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6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교교육에는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⑥ · ⑦ (생 략)	<u>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
-------------	---